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

[시행 2024.02.08] (일부개정) 2024.02.08 조례 제2834호

> 관리책임부서명 : 건강증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: 063-580-3812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노인복지법」제27조의4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무릎 인공관절 수술"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.
- 2. "의료비"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"검사비, 진료비, 수술비"를 말한다.
- 3. "수술 의료기관"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① 부안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(이하"지원 대상자"라 한다)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지원받거나 실손의료보험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.<개정 2024. 2. 8.>

- 1. 수술일 기준 부안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인 사람<개정 2023. 12. 15.><개정 2024. 2. 8.>
- 2.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"인공관절치환술(슬관절)"진단을 받은 사람
- 3.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
- ② 제1항에 따라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범위)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.<개정 2024. 2. 8.>

- 1. 간병비, 상급 병실료, 제증명료,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
- 2. 통원진료비<개정 2024. 2. 8.> [종전 제3호에서 이동<2024. 2. 8.>]
- 3.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<개정 2024. 2. 8.> [종전 제4호에서 이동<2024. 2. 8.>]

제5조(비용의 부담) 군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의료비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.<개정 2024. 2. 8.>

제6조(지원신청)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,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, 청구서 및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 2. 8.>

제7조(지원결정 및 의료비 지급)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 내용이 적절한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 2. 8.>

② 삭제<2024. 2. 8.>

제8조(환수)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 2. 8.> [종전 제9조에서 이동<2024. 2. 8.>]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24. 2. 8.> [종전 제10조에서 이동<2024. 2. 8.>]

부 칙<제2734호. 제정 2022. 12. 16.>
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- 부 칙<개정 2023. 12. 15. 조례 제281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>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<개정 2024. 2. 8. 조례 제2834호>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